


(참고자료-참조8)



**업무보고**

2021. 3. 11(목)	
장유예산상 이원형	2780
시 [2021년(2021년) 1차] 장유예산상 이원형	8971
장유예산상 이원형	8971
인원	관주장 이대형 799
	2001
기간	공유예산(2021년) 2004
	공유예산(2021년) 2011

**하대원공설시장 계약 종료 관련 상인민원사항 보고**

□ 개요

- 대상 : 하대원공설시장(중원구 마지로 118)
- 대상자 : 가동107호(남옥순), 가동116호(임영희)
- 계약기간 : 2018. 1. 1. - 2020. 12. 31.
- 요구사항 : 계약자 사망에 따른 배우자 상속 및 계약갱신 허용 요청

□ 추진현황

- 2019. 11. 19. - 11. 21. : 계약자 사망에 따른 승계신청서 제출

연번	계약자	필요호수	승계자(승계)	비고
1	남옥순	가동 107호	남옥순(배우자)	이행
2	손영희	가동 116호	임영희(배우자)	이행

- 2020. 4. 6. : 하대원공설시장 계약사망 알림(1차)

'공유예산 및 물품관리법'은 사용자에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영고권을 인정하지 아니 하며, 영고권인 대부기간 중 대부분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을 보장 하지 않으나, **행정안전부령(2020. 12월경계) 제14호**로 승계

- 2020. 8. 27. : 하대원공설시장 계약사망 알림(2차)
- 2020. 11. 2. : 하대원공설시장 계약사망 알림(3차)
- 2020. 12. 23. : 하대원공설시장 계약종료 알림(1차)

-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필요 서류 및 영고권 기간 요청  
- 이행하지 않음시 계약종료일 이후부터 가산하여 주안 상황에 대한 반상금 추가 및 필요 영고권 위한 법적절차 진행

- 2021. 1. 11. : 하대원공설시장 계약종료 알림(2차)
- 2021. 2. 18. : 하대원공설시장 계약종료 알림(3차)
- 2021. 1. 18. - 2. 5. : 2021년 제1차 하대원공설시장 민원포 모집
- 2021. 3. 2. : 민원포 모집 대상자 선정(4명)

□ 검토의견

- 공유예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1항에 의거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계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하며,
- 단 대부기간 중 대부분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또는 그밖의 **포괄 승계인에게 계약기간내에서 제한적으로 승계를 허용하고 있음.**
- 따라서 상속자(배우자 등)는 계약기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**계약 갱신은 불가함.**
- 이에 승계자가 장기간 영입활동으로 하대원공설시장에 기여한 점을 고려 검토모집공고시 입찰을 권유하였으나, 기존 검토를 비워야 할시 비용이 발생 한다는 점을 우려해 입찰을 거부함. 가동 107호(남옥순)  
**※ 가동 116호(임영희)는 입찰을 하여 가동 109호 선정**
- 승계자가 고령 및 실적을 통한 해결을 위해 저율권 범위절차(영도소송)를 추진하지 않았으나, 협의 불발로 상반기준 범위절차를 추진계획임.

**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**